

동탄2신도시 A96블록 제일풍경채 에듀&파크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

I 공급개요 및 일정

- 위 치 : 동탄(2)택지개발지구 A-96BL
- 공급규모 : 지하3층, 지상20층 9개동, 총624세대
- 배정내역

주택형	타입	세대수	세대별 공급면적(㎡)			배정호수	비고
			주거전용	주거공용	소계		
59.5513	59	358	59.5513	22.4372	81.9885	36	
76.3860A	76A	135	76.3860	27.4152	103.8012	22	
	76A-S	82					
76.5891B	76B	49	76.5891	28.1705	104.7596	4	
소계						62	

※ 상기 타입은 표기상 편의를 위한 것으로 청약시 주택형을 참조하여 주시고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(㎡)로 표기하였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.
[평형 환산방법 : 형별면적(㎡)×0.3025 또는 형별면적(㎡)÷3.3058]

■ 특별공급 일정계획

구 분	일 자	참고사항
• 입주자모집공고	2016. 07. 07(목)	일간신문 및 동탄2신도시 A96블록 제일풍경채 에듀&파크 홈페이지(http://dongtan-jeil.co.kr)
• 건본주택 개관	2016. 07. 08(금)	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29-1번지 제일풍경채 건본주택
• 특별공급 접수일자	2016. 07. 12(화)	건본주택 방문접수(인터넷 청약접수 불가)
• 특별공급 당첨자발표	2016. 07. 12(화)	당사 건본주택에 게재
• 동호수발표	2016. 07. 20(수)	아파트투유(www.ap2you.com) 및 당사 건본주택

※ 위 일정은 업무추진 중에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II 특별공급자격

- **입주자모집공고일 (2016.07.07.예정)** 현재 '무주택세대구성원'로서 「주택공급에관한규칙」 제36조 등에 의하여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함. 단, 중소기업근로자 및 군인의 경우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(단, 국가유공자, 장애인, 철거민 제외)
 - 청약예금 :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된 자
 - 청약부금 :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㎡ 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
 - 주택청약종합저축 :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매월 적립한 금액이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

<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>

주택의 전용면적	거주지역	특별시 및 부산광역시	기타 광역시	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·군지역
85제곱미터 이하		300만원	250만원	200만원
102제곱미터 이하		600만원	400만원	300만원
135제곱미터 이하		1,000만원	700만원	400만원
모든 면적		1,500만원	1,000만원	500만원

■ '무주택세대구성원'의 정의

-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(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.)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
 - 가.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
 - 나.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·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
 - 다.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(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.)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.
 - 라.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

■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

1.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'무주택세대구성원'이 아닌 자.(단, 철거민 대상자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와 상관없음)
2.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 36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(과거 3자녀 우선공급,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포함)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(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)

■ 행정사항

- 주택소유여부 등 청약적격여부는 당첨자발표 이후 건본주택에서 확인가능하며, 확인결과 위의 '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'가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여부·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. (신청자는 금융결제원에서 명단관리되어 평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박탈당함)
-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을 신청자 본인이 책임지므로, 해당 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, 특히 1번(무주택세대원 및 주택소유여부) 사항은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가능하므로 추천시 재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또한,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[미신청시 당첨자 선정(동·호배정) 및 계약불가]

III 신청시 구비서류

-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**입주자모집공고일(2016. 07. 07 예정)이후 발급분에 한함**
- 아래 필요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함
- 본인 및 배우자 이외는 모두 제3자 대리신청으로 간주됨
- 주민등록표등본은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
■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시 (각 1통)

해당서류	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특별공급신청서 등	• 신청일에 신청장소(건본주택)에 비치
청약통장이입확인서	• 청약통장 가입은행 (중소기업근로자, 군인에 한함)
주민등록표등본	•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제출
가족관계증명서	•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및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의 경우
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	• 본인 신청시는 본인의 신분증(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) 제출, 배우자 신청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(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) 제출
인감도장	• 본인 신청시 서명가능(전자본인서명확인서)

■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서류

구비서류	비 고
위임장	•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[양식은 (건본주택)에 비치]
신청자 인감증명서	
신청자 인감도장	
대리신청자	• 신분증(주민등록증 또는 여권, 운전면허증)

IV 유의사항

-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가 **신청일[2016.07.12(화)예정]에 분양사무실(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29-1번지, 제일풍경채 건본주택)에서 신청접수처 없을 경우 대상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.**
- 신청한 주택형의 동호수 배정은 특별공급 · 일반공급 구분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(금융결제원)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합니다.(미신청 · 미계약 동·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)
-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, 타 특별공급(다자녀, 신혼부부, 생애최초, 노부모부양)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,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불가, 당첨자 명단관리,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합니다.
- 공급금액, 전매제한기간, 재당첨제한기간,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**2016. 07. 07(목) 공고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**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 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고,
- **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분양사무실, 팜플렛 및 사이버 건본주택** (<http://dongtan-jeil.co.kr>)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**입주자모집공고일 (2016. 07. 07)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는** 접수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 관리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적격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.